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-8호

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

「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(조례안 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19일

옥 천 군 의 회 의 장

1. 조 례 명 :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2. 발의의원 : 추복성, 유재목 의원

3. 제정이유

○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업·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○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○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 · 여건 마련 등(안 제3조)

○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수립 · 시행 및 실태조사(안 제4조~제5조)

○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8조)

○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의 중복 지원 제한(안 제9조)

○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유관기관 ·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(안 제10조)

5. 근거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

○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
6. 의견제출

○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**2021년 3월 11일까지**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(☎ 043-730-3943, FAX 733-9225)

※ 의견통지내용

가.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일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붙임 1.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

2. 의견서 1부

옥천군조례 제 호

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옥천군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청년농업인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 등의 책무) ① 옥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·공급 및 제조, 가공,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)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청년농업인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지원방향과 목표
2.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
3.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방안

4.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방안

5. 농촌사회 정착 지원 방안

6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1. 청년농업인 애로사항

2.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

3.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

4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년농업인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사업)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

2.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지원

3.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

4.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

5.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

6.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지원

7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신청 및 선정) ①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른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.

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8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,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실적이 우수한 청년농업인을 포상할 수 있다.

제9조(지원제한)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유관기관·단체 등과 협

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생년월일 :

○ 주　　소 :

○ 연 락 처 :

○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조례안 내용	의　　견	비고